

「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·표시기준」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6월 5일

환경부장관

## 「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·표시기준」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

### 1.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

#### 가. 제품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개정

살균제의 용도에 “공기 소독용”은 없으므로, 사용상 주의사항에 ‘공기 소독의 금지’ 준수를 명확히 하기 위함

### 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(화학제품관리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| 개정(안) | 수정(안) | 수정사유 |
|-------|-------|------|
|       |       |      |

나. 성명(법인,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 및 주소

다.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전자우편 : su0529@korea.kr

- 일반우편 : (우편번호 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

### 3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([www.me.go.kr](http://www.me.go.kr), 법령 → 행정예고란)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(전화 044-201-6826, 전자우편 [su0529@korea.kr](mailto:su0529@korea.kr)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